

2020년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20. 2. 27.(목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김경숙(분과위원장), 박재화, 박정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0-2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제2호 :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57건(안전번호 제2020-5960호~6015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20-5960호~5961호는 네이버 쇼핑몰에서 방송 스크린샷을 무단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불명확한 점, 불법복제물 확산의 조기 차단이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를 부결함.

안전번호 제2020-5962호~5963호는 블로그에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964호~5969호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970호는 밴드에서 영화 불법복제물을 MP4 파일 형태로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MP4 파일은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안전번호 제2020-5971호는 네이트 판에서 웹툰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972호~5975호는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블로그 등에 게시된 일본 애니메이션 불법복제물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를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47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 주요내용: 권리주장자가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명령을 청구한 20건(안전번호 제2020-475호~494호)
 - 회의결과: 복제·전송자 정보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9개 안건은 가결하고,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 안건은 부결함.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 주요내용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미 접속차단의 시정요구를 한 해외 저작권침해 사이트 16개의 대체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URL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89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364개의 URL 정보에 대하여 '구글' 검색결과 제한 협조 요청 여부
 - 회의결과 :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접속차단 조치한 해외 저작권 침해 사이트의 대체사이트 16개 및 새롭게 접속차단 조치한 사이트 89개에 접속할 수 있는 URL 정보 등 모두 364개의 URL 정보는 검색 제한 조치를 요청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가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0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0-21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제2호, 제3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함. 제4호 안건에 대한 회의록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해당 세 안건에 대한 공개여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C 위원 : 의결 안건 제2호, 제3호, 제4호 회의록은 비공개함이 바람직함.
- B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A 위원 : 동의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다음은 제1호 안건인 회의록 7~12쪽의 저작물명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 B 위원 : 해당 내용은 민원인 신고 건에 해당함. 비식별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A 위원 :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저작물명은 비식별 처리함. 정보제공청구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16쪽~19쪽, 19쪽~23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 회의 부분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와 제5호에 따라 23쪽~28쪽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등 목록을 제시하면서)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라 위원님들의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람.
- A, C, B 위원 : 제척 사유 해당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람.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20-5960호~6015호로 게시물 수는 모두 157개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60호~596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네이버 스토어 판매자가 가구를 판매하기 위하여 예능 프로그램 방송화면의 스크린샷을 각각 이용함. 해당 스크린샷이 차지하는 분량은 전체 게시물의 1/10 정도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상품정보, 배송안내글, 고객리뷰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전번호 제2020-5960호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60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 ▲▲▲▲'를 판매하기 위하여 '▲▲▲▲ ▲▲▲▲'▲ ▲▲▲▲ ▲▲▲▲ ▲▲ ▲▲▲▲▲ ▲▲▲▲ '▲ ▲▲▲ ▲▲▲' 방송화면의 스크린샷 3장을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 '▲ ▲▲▲ ▲▲▲'▲▲ ▲▲▲▲▲ ▲▲▲▲ ▲ ▲▲▲▲!"라고 해당 상품을 소개하고 있음.

(안전번호 제2020-5961호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61호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자가 '▲▲▲▲ ▲▲▲▲'을 판매하기 위하여 '▲▲▲▲ ▲▲▲▲'이 나오는 ▲▲▲▲ ▲▲ ▲▲▲▲▲ '▲▲ ▲▲▲ ▲▲▲' 방송화면의 스크린샷 1장과 약 5초 분량의 영상 1건을 이용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 '▲▲ ▲▲▲ ▲▲▲'▲ ▲▲▲▲ ▲▲▲▲ ▲▲▲▲▲▲!"이라고 해당 상품을 소개하고 있음.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후기를 캡처하여 게시하였고, 댓글도 달려있음.

(민원인 신고 내용을 보여주면서) 민원인은 "이러한 게시글은 방송콘텐츠 및 개인창작물 불법유통의 대표적인 사례로 보입니다. 문화콘텐츠의 건전성을 위해 본 게시글을중단이나 삭제 요청드립니다."라는 내용으로 신고하였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방송물 일부 이용이 인용, 공정이용 등 저작권

제한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움. 즉 심의대상 게시물에 저작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또한 심의대상 게시물의 스크린샷 사용은 간접적인 영리의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5960호~5961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 자체의 감상이 아닌 가구 판매 홍보를 위해 방송물의 일부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 불법복제물 확산의 조기 차단이라는 시정권고 제도의 본래 취지와 거리가 있어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제2020-5960호~59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에 대해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5962호~5963호는 2명의 민원인이 각각 신고한 총 21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네이버 이용자들이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일본 애니메이션 ‘♥♥♥♥♥♥’, ‘♥♥♥♥ ♥♥♥♥♥♥! ♥♥♥♥ ♥’을 각각 제공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건 설명을 바탕으로 안건번호 제 2020-5962호~5963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건번호 제2020-5962호의 저작물은 심의위원회에서 자주 다루고 있는 것 같음.
- 성원영 전문위원 :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해당 저작물의 불법복제물을 신고하고 있음.
- 성원영 전문위원 : (안건번호 제2020-5962호 조사자료를 제시하면서) 해당 블로그의 다른 카테고리에서 ‘♥♥♥♥♥♥♥♥’ 외에도 ‘♥♥♥♥ ♥♥♥’, ‘♥♥♥♥’, ‘♥♥♥♥♥♥♥♥♥♥’ 등 다양한 일본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C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5962호~5963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건번호

제2020-5964호~5969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총 6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영화 '○○○ (○○○○)', '○○○○ (○○○○)', '○○○○ ○○(○○○○)', '○○○○ ○(○○○○)', '○○ ○○○ (○○○○)', '○○○○ ○○ ○ : ○○○ ○○(○○○○)'를 각각 판매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20-5964호의 경우 배급사를 저작권사로 기재해도 되는 것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배급사가 독점적 또는 배타적 권리인지 여부 등은 파악하지 않고 기재한 것으로 보임. 다만,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964호~5969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워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A 위원 :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이므로 시정권고를 해야 함.
- B 위원 : 같은 생각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964호~5969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70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총 1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심의대상 게시물은 최신 영화 '●●●'을 MP4 파일 형태로 제공하고 있음. 우측 하단에 표시된 바와 같이, 해당 안전의 모니터링 날짜는 2020. 2. 17.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MP4 파일 다운로드 기간은 2020. 2. 17. 기준 10일 남은 것으로 보임. 해당 MP4 파일은 2020. 2. 27. 현재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지 않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존재하는 밴드는 회원 수가 2020. 2. 21. 현재 1,062명임. 해당 밴드는 대리기사 권익 보호 및 정보 공유 등을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해당 밴드는 누구나 검색 가능하고, 게시물은 회원가입 시 볼 수 있음.

우리 심의위원회는 밴드 내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가 이루어질 경우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이 위축될 수 있으므로 밴드 개설 목적, 가입의 용이성 내지 폐쇄성, 회원수의 많고 적음 등을 고려하여 시정권고 여부를 정하고 있음.

- A 위원 : 해당 밴드는 가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밴드는 가입이 어려워 보이지 않음. 다만, 민원인은 2020. 1. 31. 신고하였고, 보호원은 2. 17. 심의를 요청하였음. 담당자에게 17일 정도 지연된 이유를 확인해봤음. 해당 밴드가 공개 밴드가 아니어서 민원인에게 사정을 설명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모니터링을 희망하였다고 함. 해당 밴드에 가입하여 모니터링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함.

- B 위원 : MP4 파일을 다시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는지?

- 성원영 전문위원 : 해당 밴드의 게시물은 회원가입을 하여야 볼 수 있기 때문에 보호원이 심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음. 또한 재업로드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오늘 심의대상은 아님.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5970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해당 사안은 현재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바람직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현재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중단되어 있으므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함이 타당해 보임.
- B 위원 : 같은 의견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970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71호는 민원인이 신고한 총 1건 게시물에 대한 사안임. 네이트 판 이용자가 웹툰 '♣♣♣ ♣♣♣ ♣♣♣' 한 화 전체 분량을 제공함.
(안전번호 제2020-5971호 URL에 직접 접속하면서) 해당 어문저작물의 상당한 분량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게시물 하단에 출처 표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댓글은 없음. 합법 시장에서 해당 어문저작물의

16화는 아직 무료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참고로 해당 웹툰은 네이버 웹툰 홈페이지에서 1화부터 8화를 무료로, 앱에서 24시마다 한 화를 무료로 볼 수 있음. 네이버 시리즈에서 해당 웹툰을 대여 및 소장하여 감상 가능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댓글은 없으나, 조회 수는 12,652회인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2014년도에 게시된 것으로 보임.
- A 위원 : 2014년도에 업로드된 게시물을 민원인이 최근에 발견하여 삭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보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971호에 대한 의견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 A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C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97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72호~5975호는 2019. 12 20.부터 2020. 2. 4.까지의 민원 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총 4개 안전, 79개 게시물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20-5972호~5975호에 대한 의견 구함.
- B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은 저작물을 불법 업로드한 것으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움.
- C 위원 : 시정권고하는 의견에 동의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972호~597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76호~6015호는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방송 '영덩이 탐정'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5979호는 웹하드에서 '영덩이 탐정 24회'를 4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일본 NHK E 테레 채널에서 2018. 5. 3.부터 2019. 3.

30.까지 방영되었고, 우리나라 재능 TV 채널에서 2019. 7. 8.부터 방영 중인 TV만화임. 해당 방송은 총 26부작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은 더빙판임.

(영화 '미스터 주: 사라진 VIP'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 2020-5988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24. 기준 상영 중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2. 1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영화 '남산의 부장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6002호는 2020. 1. 22. 개봉한 영화를 모바일 웹하드에서 22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20. 2. 24. 기준 상영 중임. 참고로 해당 영화는 2020. 2. 18.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시작하였음.

(방송 '이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보았다'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 안전번호 제2020-6014호는 웹하드에서 '이과가 사랑에 빠졌기에 증명해보았다 1화'를 70 포인트에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상물은 일본 Tokyo MX 채널에서 2020. 1. 10.부터 금요일 밤 12시 30분에 방영 중인 TV만화임. 심의대상 게시물의 영상 속에는 SMI 한글 자막 파일이 포함되어 있음. 해당 방송은 원작이 만화임.

- 김경숙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안전번호 제 2020-5976호~601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에서 모두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있음.
- C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들은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임.

- B 위원 :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함. 다만, 심의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함.
- 김경숙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976호~6015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20-5960호~5961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20-5970호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안전번호 제2020-5962호~5969호, 제2020-5971호~6015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불법복제물등에 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 제2호: 저작권법 제103조의3에 따른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제공 청구 심의

제2호 안전에 관한 회의록은 16쪽부터 20쪽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복제·전송자에 관한 정보 제공 청구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475~494호 복제·전송자 정보 제공 명령 요건을 충족하는 19개 계정에 대하여는 가결하되, 저작권 침해의 개연성이 부족한 1개는 부결함.”

○ 제3호 : 구글 검색결과 제한

제3호 안건에 관한 회의록 21쪽부터 26쪽까지는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회의공개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1항 제2호, 제5호에 따라 비공개로 결정함.

(구글 검색결과 제한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건번호 제2020-1305호~1668호는 구글 검색결과 제한을 가결함.”

4. 폐회 선언

○ 김경숙 분과위원장이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0년 제24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0. 3. 12.

분과위원장 김경숙

위원 박재화

위원 박정인